

소득 정산제도란?

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 국세청
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

※조정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2022년 9월 이후부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
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,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하게
다음해 11월에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.

부과·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하지만,
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사이
→ 시차 발생*

건강보험료 조정

당해년도의 소득 변동사실 확인 후 보험료 조정
→ 시차 완화

소득 정산제도 시행⁽¹⁾

조정제도의 악용 방지와 소득변화의 공정한 반영

가입자의 신청으로 조정된 보험료는 차후,
확정된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부과 또는 환급

[숫자 주석:리플릿 뒷면 게재]

*2022년 11월 보험료 산정 예시



본문 주석 (근거 및 추가 설명)

(1) 소득 정산제도 시행
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2, 제42조 ②항

(2) 종합소득금액

-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
- 연금소득은 5대 공적기관 자료(국민연금, 사학연금, 공무원연금,
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)

(3)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(5. 1.~5. 31)

-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동년 6. 30.까지
- 소득세법 제70조, 제70조의 2

(4) 전년도 소득 분에 대해 이듬해 11월 부터 산정하여 납부
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③항



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·정산제도 문의
1577-1000 (발신자 요금부담)



제도 설명 영상

h·well
국민건강보험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

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·정산제도 안내

소득변화 부담 줄이는
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제도!
정산제도 시행으로 더 공정하게!



h·well
국민건강보험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

작년에 이미
사업장 폐업했는데
건강보험료는
왜 그대로지?



건강보험료는
올해 11월 전까지는
재작년 소득으로
산정해서 그래

그럼 올해 소득이
줄어든 상황은
언제 반영되는
거야?



내년 5월에
종합소득
신고하면...
그 내용으로
내년 11월이나
가능하겠지?

안그래도
힘든데... 꼭
그래야 해?

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
내년 5월이고 그 자료를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
받아서 산정하니깐 시간상
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!

아 그렇구나...
빠르게 부담을 좀
덜고 싶었는데...

걱정마! 국세청에 폐업이나
휴업 신고했다면
당장 **조정제도** 신청해봐!
보험료 조정이 될거야! 그리고

정산제도가 새로 생겼어!

올해 납부보험료
(1~12월)

재산정
보험료

⇒ 환급

올해 납부보험료
(1~12월)

재산정
보험료

⇒ 추가
납부

아하~ 직장인
연말정산처럼 말이지?
딱 이해가네.

소득 보험료 조정·정산 주요 내용

소득 부과 보험료 • 조정제도

신청 대상

- 사업소득 or 근로소득* 활동이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(휴, 폐업 등)로 현재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
*종교인기타소득 포함(소득세법 제21조)
※ 시행령 제41조의2 ①항에 따라 사업소득·근로소득만 조정가능

제출서류

- 소득 정산부과동의서
※ 서식 다운로드: 건강보험 홈페이지 → 민원여기요 → 서식자료실
- 증빙서류: 휴·폐업 사실증명, 퇴직(해축)증명서 등
※ 휴·폐업 신고자 및 공단 전산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
※ 팩스 및 우편 신청 시, 신분증 사본(앞면) 제출 필수

동의서 서식자료실 바로가기



조정 기간

-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
- 1일 신청 시, 당월부터 조정
- 11~12월 신청 시에 한하여,
①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
② 신청 당해 및 다음해까지 2년 정산 신청 가능



서류 없이 간편하게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하는 방법 (휴·폐업 신고자에 한정)

1. 모바일(The건강보험) ▶ 민원여기요 → 민원안내 → 신청·납부 → 소득 조정·정산 신청 및 조회
2. 홈페이지 ▶ 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보험료 조회/신청 → 소득 조정·정산 신청 및 조회

모바일앱
다운로드QR



소득 부과 보험료 • 정산제도

정산 기간

- '23.1월~12월분 보험료를 '24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
※ 22년에 한해 '22.9월~12월분 보험료를 정산

정산소득

-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, 소득정산 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산액 [국세청 확정 소득]으로 정산 적용
※ 재산정된 정산보험료는 조정 불가

취소기간

-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, 소득정산 보험료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고, 소득 조정 혹은 정산 중 일부만 신청 혹은 취소 불가

유의사항

- 현재 부과중인 소득보다 실제 소득(연소득)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해야 함
- 소득 보험료 조정 후, 「피부양자 취득」, 「본인부담상한제」, 「장기요양급여비」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소급 상실 및 환수 될 수 있음에 유의
- 소득이 줄어들었다더라도, 납부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 부과될 수 있음